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장 애 인 복 지 법 시 행 규 칙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권덕철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·가공 시설,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「장애인복지법」이 개정(법률 제16733호, 2020. 12. 29. 공포, 2021. 6. 30. 시행)됨에 따라 입지조건 및 부속용도 기준을 포함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시설 기준(별표 5 V 제1호)을 신설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직업재활시설의 부속용도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타 :

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5 V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시설 기준

가. 입지조건

지역별 적정한 분포와 장애인 수, 보건·위생·급수·안전·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장애인이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나 건물을 선정하여야 한다.

나. 부속용도 기준

- 1) 제조·가공 시설
- 2) 판매시설
- 3) 공장 및 영업장
- 4) 그 외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시설

부 칙

이 규칙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